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287 발의연월일 : 2024. 9. 25.

발 의 자:김용민・이성윤・장경태

서영교 • 박지원 • 박균택

전현희 · 모경종 · 김용만

이건태 • 민형배 • 김동아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의 발전으로 불법 촬영물이 쉽게 복제 및 유통되고 있음. 따라서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SNS등에서 영상이 자동 재생되거나 또는 자동 다운로드가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의사에 반하여 시청·소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확하게 '알면서'라고 규정하여 수사 대상에 무고한 사람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복제물을"을 "복제물임을 알면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4
또는 <u>복제물을</u> 소지·구입·저	<u>복제물임을 알면서</u>
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